

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최근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

장용준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(yjjang@kiep.go.kr, Tel: 3460-1065)

박혜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(hrpark@kiep.go.kr, Tel: 3460-1029)

이준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연구원 (jwlee2@kiep.go.kr, Tel: 3460-1088)

차 례 ● ● ●

1.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요
2.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변천 및 성과
3. 최근 미국 의회 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논의 동향
4. 향후 전망

주요 내용 ● ● ●

- ▶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(TAA: Trade Adjustment Assistance)는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과 해당산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임.
 -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09년까지 총 6만 8,590건의 TAA가 청원되었으며, 이 중 총 3만 6,116건이 승인되었음.
- ▶ 최근 TAA의 연장여부와 관련해 미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한·미 FTA 비준 문제와 맞물려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 - TAA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2009년에 도입된 TAA 개정안(이하 2009년 TAA)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임.
 - 대체적으로 민주당은 2009년 TAA 연장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한·미 FTA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이고, 공화당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2009년 TAA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임.
 - 이러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는 2011년 5월 26일 미 상원 재무위가 개최한 ‘한·미 FTA 청문회’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.
- ▶ 역사적으로 TAA는 ‘사회적 형평성’과 ‘경제적 효율성’의 근거에 의한 것보다는 ‘정치적 협상’의 결과로서 계속 연장되어 왔음.
- ▶ 민주당·공화당 모두 한·미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과 한·EU FTA 비준에 대해 견제하고 있다는 점, 최근 공화당 내부의 논의 흐름, 정치적 협상수단으로서 TAA가 연장되어 왔던 역사적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번 TAA 연장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 여름 휴회기간(8월 8일~9월 5일) 전에 양당 간의 그랜드 바겐(Grand Bargain)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.
 - 단, 2009년 TAA 제도의 세부적인 검토, 배정되는 예산규모와 지원방식의 협의에 따른 시간 소요문제가 언제 합의될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임.

1.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요

■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(TAA: Trade Adjustment Assistance)는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과 해당산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임.

- 창설¹⁾ 당시 기업과 근로자만을 지원하였으나 2002년부터 농어민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지원대상에 따라 현금지원, 직업훈련, 구직 및 전직 비용지원 등을 제공함.
- 담당기관은 미 상무부 경제개발청(기업), 노동부 교육훈련청(근로자), 농무부 해외농업국(농어민)이며, 각 기관은 매년 프로그램 운영내역을 미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와 미 하원 재정위원회에 보고함.

■ 최근 TAA 연장여부와 관련해 미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한·미 FTA 비준 문제와 맞물려 진행됨에 따라 TAA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
- TAA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2009년에 도입된 TAA 개정안(이하 2009년 TAA)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임.
 - 2009년 TA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「2009년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(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)」에 의거, 지원 범위 및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적용되어 왔으며, 2011년 2월 12일부로 그 효력이 만료된 상태임.
- 대체적으로 민주당은 2009년 TAA 연장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한·미 FTA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이고, 공화당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2009년 TAA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임.

■ 향후 미 의회 내 2009년 TAA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한·미 FTA 비준 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, TAA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최근 논의의 핵심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-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미국 TAA의 변천과정과 성과 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TAA의 역할, 특히 정치적 협상수단으로서 TAA를 조명해보고, 최근의 미 의회 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2009년 TAA 연장 방안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함.

2.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변천 및 성과²⁾

가.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용현황

■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09년까지 총 6만 8,590건의 TAA가 청원되었으며, 이 중 총 3만 6,116건이 승인되어 전체적으로 52.7%의 승인비율을 기록하였음.

1) TAA는 1962년 「무역확대법」을 근거로 창설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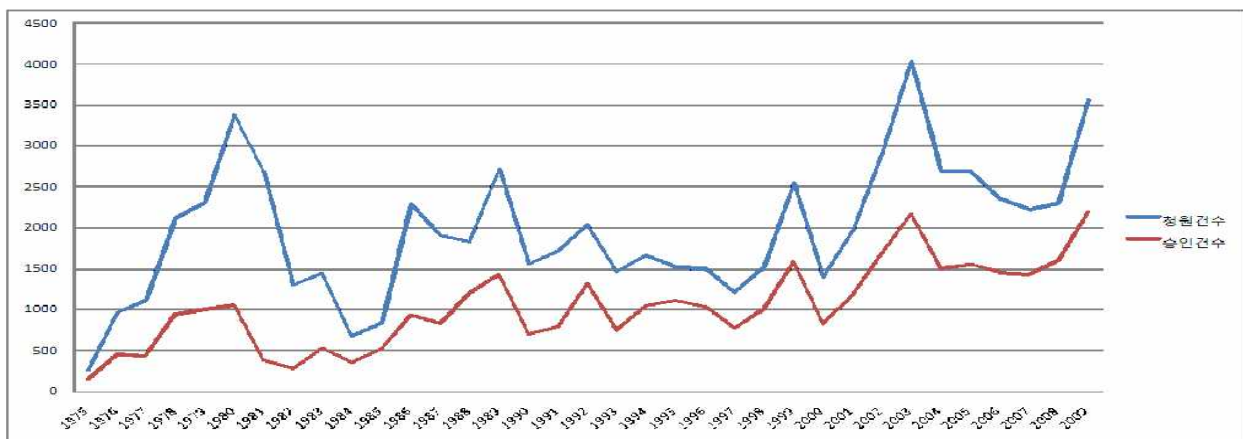
2) 미국 TAA 관련 예산의 약 90%는 노동자 대상 TAA로 배분되어 있음. 따라서 이 장의 TAA는 노동자 대상 TAA를 주내용으로 다루고 있음.

- [그림 1]에 따르면, 1975년과 2009년 사이 TAA 청원건수와 승인건수 모두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1980~90년대의 경우 양 건수 모두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00년대 들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.
- 미국의 경기후퇴 시기에 맞추어 1980년, 1989년, 1999년, 2003년, 2009년의 TAA 청원건수와 승인건수 모두 급증하였음.
- 이러한 사실을 통해 경기수준이 TAA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음.

■ 경기수준 이외에도 정치적 변수로서 당시 집권당의 성향과 그에 따른 정책이 TAA 청원건수와 승인건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.

- 1975년부터 2000년 사이 민주당 집권시기의 평균 TAA 승인비율은 55.6%로 공화당 집권 시의 46.2%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.
- 민주당 출신 지미 카터(Jimmy Carter) 대통령의 재임시절인 1977년부터 1980년 사이에는 TAA 청원건수와 승인건수 모두 급증함.
- 이후 공화당 출신 로널드 레이건(Ronald Reagan)과 조지 부시(George H. Bush) 대통령 재임시절인 1981년부터 1993년까지는 양 건수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추세를 보임.
- 특히 1981년도의 급격한 감소는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된 TAA 자격심사에 대한 규정강화와 각종 혜택 완화에서 기인한 것임.
- 이러한 사실은 [그림 2]에서 TAA 청원건수 대비 승인건수 비율이 1980년도에 최저로 떨어진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.
- 2002년과 2009년도의 경우 다소 정치적인 목적하에 실시된 TAA 제도개정³⁾으로 인해 지원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었고, 이로 인해 TAA 청원건수와 승인건수 모두 급증함³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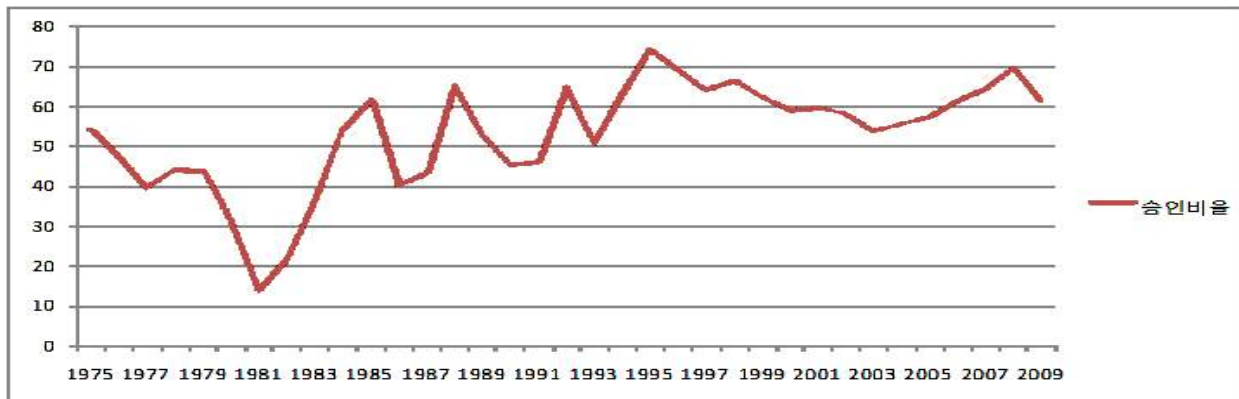
그림 1. 미국 TAA 청원건수 및 승인건수(1975~2009년)



자료: 미국 노동부(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).

3) 개정의 세부내용은 「2002년 무역조정지원개혁법」과 「2009년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」에 잘 나타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2장 내에서 다루고 있음.

그림 2. 미국 TAA 청원건수 대비 승인건수 비율(1975~2009년)



자료: 미국 노동부(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).

나. 2002년, 2009년 TAA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

■ TAA는 창설 이래 현재까지 약 50여 년 동안 미국의 정치·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운영되어 왔으며, 개정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TAA가 ‘정치적 도구’로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.

- 1983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: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)의 의회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NAFTA-TAA를 제정하여 지원범위를 넓힘.
- 2002년에는 「무역조정지원개정법」에 의거하여 NAFTA-TAA와 통합되면서 확대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, 이는 당시 부시 행정부의 ‘무역협정에 대한 신속처리권한(TPA: Trade Promotion Authority)’ 제도의 통과와 FTA에 대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임.⁴⁾
-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의 급격한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(Obama) 행정부가 추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「2009년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」에 의거하여 개정됨.

■ TAA의 진화과정에서 주요 기점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농어민 지원이 도입된 2002년,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이며, 지원내용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.

- 1970년대 TAA는 지원방식이 단순하고, 수입증대로 인한 직접피해 근로자만을 지원하였으나 1980년대, 1990년대에는 지원방식이 다양해지고, 무역간접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짐.
- 2002년에는 직업훈련 서비스, 의료보험 세금공제 혜택 등이 추가되어 지원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, 농어민 지원을 도입하는 등 지원규모도 확대됨.
- 2009년 TAA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종사자도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실직한 서비스업 근로자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직업훈련 및 실업자 지원혜택 신청자격을 부여하고, 그 지원 기간 및 규모 등도 대폭 증가하였음(표 2 참고).

4) 송원근(2011), 『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거와 한계』, 정책연구 2011-03, 한국경제연구원.

- 현재 미 의회 내 TAA에 대한 논의는 2009년 TAA 개정안 연장여부를 논하는 것으로 만약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02년 TAA 개정안으로 돌아감.

표 1. TAA 주요 지원내용 비교(근로자 지원)

구분	2002년 TAA	2009년 TAA
지원대상	수입증대로 직·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	수입증대로 직·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
무역조정수당	• 풀타임 직업훈련에 등록된 근로자에 최장 104주 까지 현금 지원 • 보충훈련 및 필수훈련 과정은 최장 130주까지 현금 지원	• 풀타임 직업훈련에 등록된 근로자에게 최장 130주까지 현금 지원 • 보충훈련 및 필수훈련 과정은 최장 156주까지 현금 지원
직업훈련 서비스	• 풀타임만 승인 • 승인된 근로자는 기존 직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그만 둔 이후에 훈련을 시작할 수 있음	• 무역재조정허용금(TRA: Trade Readjustment Allowances) 승인자격은 풀타임이지만 직업훈련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기준으로 승인 가능 • 승인된 근로자는 기존 직장에서 해고 위험이 있을 경우 훈련을 시작할 수 있음
구직수당	구직비용의 90%, 최대 1,2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	구직비용의 100%, 최대 1,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
전직수당	• 전직비용의 90%까지 지원, 연방정부 근로자의 법적 한도까지 가능 • 추가적으로 일시금 1,250달러 제공함	• 전직비용의 100%, 연방정부 근로자의 법적 한도까지 가능 • 추가적으로 일시금 1,500달러를 제공함
의료보험 세금공제	월간 의료보험 비용의 65%에 대해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	월간 의료보험 비용의 80%까지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
특이사항 및 기타	• 농어민 지원 도입 • NAFTA-TAA와 통합하면서 지원규모 확대	서비스업 근로자를 지원대상에 포함

자료: 미국 노동부 교육훈련청; Baicker, K. and M. Marit Rehani(2004), "Policy Watch Trade Adjustment Assistance," *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*, 18(2), pp. 239-255 이용 저자 재작성.

다.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성과

- ‘사회적 형평성’ 측면과 ‘경제적 효율성’ 측면에서 TAA 제도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데 반해 ‘정치적 협상수단’으로서 성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.⁵⁾
 - ‘사회적 형평성’은 개방에 따른 피해계층에 실질적 보상이 잘 이루어졌는지 논의하는 것인데, TAA는 무역관련 실업자들이 실직 전의 임금수준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는 비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⁶⁾
 - TAA 수혜자의 경우 일반 실업수당 수혜자보다 재취업 시 받는 임금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.
 - ‘경제적 효율성’은 TAA가 구조조정 원활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했는지 논의하는 것인데, 보상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으로 인해 TAA 수혜자의 경우 일반 실업수당 수혜자보다 재취업 때까지의 기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됨.⁷⁾

5) 미국 TAA 제도운용평가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서 Magee(2001), "Administered Protection for Workers: An Analysis of 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," *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*, Vol. 53이 있음.

6) Marcal(2001), "Does Trade Adjustment Assistance Help Trade-displaced Workers?" *Contemporary Economic Policy*, Vol. 19.

- 또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보상이 퇴출의 유인으로 작용하고, 퇴출대상 근로자들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역선택의 문제점도 발생함.
- ‘정치적 협상수단’은 자유무역의 확대과정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가 이해집단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한 내부 협상수단으로서 TAA가 유효한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임.
- 보상이 보호를 대체한다는 의미인 ‘보호조치의 효과적인 대체제’로서 TAA는 유용한 정책수단임.⁸⁾
- 1962년 TAA는 시작단계부터 케네디 라운드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노동계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됨.⁹⁾
- 또한 1974년 동경 라운드와 1992년 NAFTA의 무역자유화정책 추진과정에서 TAA는 비판론자들의 우려를 줄이고, 이들의 지원을 얻어내는 효율적 정책수단이었던 것으로 평가됨.¹⁰⁾

3. 최근 미국 의회 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논의 동향

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‘정치적 협상수단’으로 주로 이용되는 TAA 제도는 최근에도 한·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비준안 통과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음.

- 미국 국가경제회의(NEC: National Economic Council)의 진 스펠링(Gene Sperling) 의장은 지난 5월 16일 기자회견과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“2009년 TAA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, 콜롬비아,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힘.

■ TAA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본적인 정책 차이는 2009년 TAA 연장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확인됨.

- 공화당은 한·미 FTA에 콜롬비아, 파나마와의 FTA를 묶어서 일괄 패키지 법안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2009년 TAA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.
-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이 2009년 TAA 연장처리에 합의하지 않으면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.
- 진 스펠링 NEC 의장은 “무역과 수출 확대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생기지만,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고통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재고용 지원을 해야 할 경제적, 도덕적 의무도 있다”며 외국기업과의 경쟁 확대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함.

■ 미 상원 재무위는 2011년 5월 26일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(Demetrios Marantis) 무역대표부(USTR: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) 부대표와 업계 대표, 상·하의원 등이 참여한 한·미 FTA 관련 청문회를

7) Corson and Nicholson(1995), “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Workers: Results of a Survey of Recipients under the Trade Act of 1974,” *Research in Labor Economics*, vol. 4.

8) 허 윤(2007), 「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」, 『국제통상연구』, 제12권 1호.

9) Aho and Bayard(1980), “American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fter Five Years,” *World Economy*, vol. 3.

10) Bohanan and Flowers(1998), “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,” *Cato Journal*, vol. 18.

개최하였는데, 이 회의에서도 2009년 TAA 연장에 대한 민주당·공화당 간의 첨예한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음.

- 민주당은 2009년 TAA 연장 없이는 FTA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, 공화당은 현재의 막대한 재정적자 상황에서 이를 연장할 경우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함.
- 청문회 참석자들의 2009년 TAA 연장에 대한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.¹¹⁾
 - 맥스 보커스(Max Baucus) 상원재무위 위원장(민주당)은 미국 근로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2009년 TAA를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, 이는 3개국 FTA 비준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함.
 - 오리인 해치(Orrin Hatch) 상원재무위 간사(공화당)는 TAA 연장문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한·미 FTA 비준을 지연시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.
 - 드미트리야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는 세계화가 산업과 고용에 변화를 초래하고, TAA는 1964년부터 이런 거대한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을 도와온 중요한 무역정책임을 강조함.
 - 또한 한·미 FTA로 인해 특정 산업은 반드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, 이러한 산업부문의 근로자들을 위한 2009년 TAA 제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.

4. 향후 전망

- 한·미 FTA 관련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공화당·민주당 모두 1) 한·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, 2) 한·EU FTA 비준에 대해 견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
- 이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 상원재무위 위원장과 존 케리(John Kerry) 의원은 한·미 FTA가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.
- 공화당 의원들 역시 한·미 FTA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수준 높은 FTA라고 평가하고 있으며, 수출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.
- 드미트리야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는 한·EU FTA가 올 여름부터 발효되는 시점에서 한·미 FTA가 조속히 비준되지 않는다면 한국시장에서 미 업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EU가 차지할 것이고, 한·미 FTA가 지연될 수록 이 같은 피해에 대한 회복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함.
- 청문회에 업계 증인으로 참석한 티모시 게르틴(Timothy Guertin) 배리언 메디컬 시스템스(Varian Medical Systems) 사장과 에럴 라이스(Errol Rice) 몬타나 목축업협회(Stockgrowers Association) 부회장 또한 한국시장 내 많은 경쟁사들이 EU 업체들임을 강조하면서 한·미 FTA 지연으로 인한 미 업체의 시장점유율 감소에 우려를 표명함.

- 2009년 TAA 연장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나뉘고 있음.¹²⁾

11) 무역협회 워싱턴지부 통상정보, 2011-527-049.

12) 『연합뉴스』(2011. 5. 17).

- 2009년 TAA 연장에 대한 공화당 내 반대성향은 ‘티 파티(Tea Party)’¹³⁾ 흐름을 타고 새롭게 의회에 입성한 초선의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.
- 그러나 정부의 무역자유화정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일정한 구제책과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흐름도 공화당 내에 존재함.
- 예산을 담당하는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캠프(David Camp) 하원 세입위원장의 경우 TAA 제도 연장에 반대하고 있지 않음.

■ 이상 언급된 1) 한·미 FTA의 중요성 인식, 2) 한·EU FTA 발효에 대한 견제, 3) 최근 공화당 내부의 논의 흐름, 4) 역사적으로 TAA가 정치적 합의에 의해 계속 연장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, 한·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2009년 TAA 연장문제에 대한 공화당·민주당 간의 그랜드 바겐(Grand Bargain)이 미 여름 휴회기간(8월 8일~9월 5일) 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진 스펔링 NEC 의장은 2009년 TAA 연장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미 의회와 협의할 것으로 밝혀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음.¹⁴⁾
- 공화당 소속 존 보너(John Boehner) 하원의장은 지난 5월 5일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미 의회 여름 휴회기간 이전에 3개 FTA(한국, 콜롬비아, 파나마)가 비준되어야 함을 강조함.
- 한·미 FTA 비준 지연과 관련한 정치적 손실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더 큰 것으로 분석됨.
-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·미 FTA 비준이 안 될 경우 약 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오바마 행정부에 비준을 촉구한 바 있음.¹⁵⁾
- 공화당 소속 케빈 브래디(Kevin Brady)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은 6월 14일 무역비상위원회(ECAT: Emergency Committee for American Trade)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2009년 TAA 연장문제에 대한 의회 내 이견 조정이 최근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, 한·미 FTA 등 3개 FTA가 올 여름에 비준될 것으로 낙관함.¹⁶⁾
- 따라서 양당 모두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2009년 TAA 연장문제에 대한 합의가 미 의회 여름 휴회 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함.
- 현재 USTR 또한 2009년 TAA 연장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¹⁷⁾
- 단, 2009년 TAA 제도의 세부적인 검토, 배정되는 예산정도와 지원방식의 협의에 따른 시간소요 문제가 언제 합의될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임. KIEP

13) 미국의 조세 저항운동. 특정 정당이 없으면서 정치적으로는 보수성향을 띄어 ‘극우 반정부 운동’을 뜻하기도 함. 2009년 초 미국 오바마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7,8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경기부양에 국민세금을 쏟아부어 국가의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게 된 데 반발하는 시민이 늘면서 티 파티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됨(기획재정부(2010), 『시사경제용어사전』 참고).

14) 『연합뉴스』(2011. 5. 17).

15) 미국 상공회의소, 『한미 경제협력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』.

16) Inside U.S. Trade(2011. 6. 14).

17) 무역협회 워싱턴 지부 통상정보, 20110527-049.